

## 2. “並行輸入” 許容의 經濟的 效果

- (焦點) 財經院은 11월 6일 부터 並行輸入을 허용함
  - (許容範圍) 國의 商標權者와 國내 상표권자(또는 國내 專用使用權者)가 동일인이거나 系列會社, 輸入代理店 關係에 있는 경우
  - (禁止持續) 위의 關係가 아닌 國내 상표권자(또는 國내 전용사용권자)가 수입은 하지 않고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 병행수입 금지 지속
- (爭點) 反對論은 상표권 보호가 출처표시, 품질보증 기능뿐 아니라, 購買前 및 구매후의 광범위한 서비스 투자에 필요한 前提條件임을 내세우고 반면에 贊成論은 병행수입 금지가 독과점의 國際적 擴散 및 強化를 초래하고 수입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봄
- (評價) 수입상품과 關連상품의 가격안정 및 多樣化, 유통업계의 경쟁력 提高를 기대. 병행수입 허용은 전반적으로 世界化 및 市場開放 추세에 부합하여 상표권 보호와 경쟁 촉진의 두 가지 원칙을 잘 調和시킨 정책임

**並行輸入** 이란 國내 獨占輸入 業者에 의해 外國商品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國내 독점 수입업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

### ○ “並行輸入”의 정의

- 병행수입(parallel import) 이란 國내 獨占輸入業者에 의해 外國商品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國내 독점수입업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함
- 眞正商品이지만 國내 상표권자의 동의도 없이 수입되어 white market 商品도 아니므로 미국에서는 (불법한 black marketing 과 비교하여) gray marketing 혹은 gray market import 라고 부름

**병행수입 금지** 는 독과점의 國際적 擴散 및 強化를 초래

### ○ 병행수입 허용의 贊成論

- 병행수입을 금지할 경우 商品의 자유로운 유통을 금지하여 外國 브랜드가 國際적 價格差別化로 國際적 독점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게됨
- 병행수입 금지는 國내 유통 회사의 대외 경쟁력 약화를 조장함

- 소수 고급 브랜드 상표권의 과도한 보호는 사치성을 喚起·助長하여 사회적 厚生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환율변동, 초과생산 등으로 수입단가가 떨어져도 독점수입업체는 국내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에서 저렴하게 수입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됨

상표권 보호는 출처표시, 품질보증 기능뿐 아니라, 購買前後의 광범위한 서비스 투자에 필요한 前提條件

○ 병행수입 허용의 反對論

- 병행수입자는 기존 상표권자가 형성한 영업권(good will)에 무임승차(free ride)하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가능하므로 상표권 보호는 정보로서의 광고, 고객 기호에 個別化된 전문적 상담, 품질 및 A/S등 광범위한 서비스 투자를 가져오는 전제조건임
- 병행수입은 서비스에 의한 商品差別化, 多樣化를 소멸시키기 쉬움
- 병행수입으로 다수의 외국 브랜드 상품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고유의 경쟁브랜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
- 수입 브랜드 다양화로 소비자가 진정상품을 판별 하는데 전문 지식을 필요하게 됨
- 외국상표권자는 供給線 제한, 국내 수입대리점과 자본유대 강화를 통해 병행수입에 맞설 수 있음

○ 許容의 背景 및 經過

- 미국등 선진국들은 지난 수십년간 국내외 상표권자가 同一人 또는 系列社 관계인 경우 병행수입을 널리 허용 해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독점수입업자가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경우 제3자의 병행수입은 국내 상표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되어 최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음
- 그런데 최근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 주요 수입 소비재의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의 2.7 배로 높게 형성되

재경원은 과도한 수입 소비재 가격과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책으로 미국 등先進國의 병행수입 허용 추세에 맞추어 1995년 11월 6일부로 병행수입을 허용

어 있음

- 또한 流通市場 開放을 앞두고 국내 유통회사들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여 재경원은 4개월여 의견 조율 끝에 병행수입 허용제도의 틀을 완성하고 9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함
- 95년 7월 20일 재경원은 관계부처회의를 통하여 브랜드내의 그리고 브랜드간의 경쟁을 誘發하기 위하여 다시 병행수입이 폭 넓게 허용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허용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95년 10월 20일 재경원은 병행수입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서 관련 규정인 관세청 知的財産權관련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 규정과 公正委 병행수입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을 개정 및 제정

製造, 販賣만 하는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상표권자와 동일인, 계열사, 또는 수입대리점 관계라고 볼 수 없을 때 병행수입 금지

○ 병행수입의 허용 범위

- 현재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수입은 하지않고 제조, 판매만 하는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상표권자와 동일인, 系列社, 또는 輸入代理店 관계라고 볼 수 없을 때. 단 수입을 하더라도 국내 총 판매량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原產地가 동일한 상품에 한해 병행수입을 허용
- (계열사관계의 기준) 국내외 상표권자가 本支社관계 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議決權있는 주식의 50% 이상 소유하거나 또는 最大 株主로서 상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30% 이상 소유한 경우
- (眞正商品의 기준) 상품의 품질은 동일한 상표라도 각국의 기호, 기후, 제도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생산되므로 근소한 품질 차이때문에 眞正商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병행수입의 금지 요청이 가능하게되 병행수입의 허용이 실효를 거둘 수 없게됨으로 진정상품의 기준이 추가로

규정됨

- 稅關場에 신고된 상품과 市中에 공급된 상품이 동일한 상표와 품질로서 보증이 되어야 하나 명백히 품질이 다른 경우 진정상품으로 보지 아니함. 단 상품의 품질은 각국의 기호, 기후, 제도에 따라 약간 달리 생산되므로 근소한 차이는 병행수입 금지 요청 이유가 될 수 없음

수입상품과 관련상품의 價格安定 및 多樣化, 유통기업의 경쟁력 提高를 기대. 병행수입 허용은 世界化 및 市場開放 추세에 맞추어 상표권 보호와 경쟁촉진의 원칙이 잘 調和된 정책

#### ○ 「並行輸入 許容」의 評價

- 상표권 보호하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여러가지 서비스 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과도한 수입품 판매 마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문제이며 경쟁촉진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수입 상품과 관련 상품의 가격 안정 및 다양화, 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됨
- 전반적으로 세계화와 시장 개방 추세에 부합하며 상표권 보호의 정도와 경쟁 촉진의 원칙이 細部的으로 잘 조화된 정책임

#### ○ 政策 課題

- 기존 수입대리점의 영업권 형성분과 영업 이익을 위하여 병행수입 허용의 猶豫期間 設定이 필요함
- 國內衣類業體의 국제적 디자인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資本的 紐帶」에 대한 定義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해질 수 있으며 개별적 事例에 대한 柔軟한 司法的 評價 능력이 요청됨

(이 세 재)